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 인

2026년 5월 21일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따라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규정 신설(안 제44조의2)

나. 영상회의록 공개기준과 공개대상 규정 신설(안 제44조의3)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 투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규칙 제3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써”를 “규정함으로써”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인정될”을 “인정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정하되”를 “정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의된”을 “부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부의안건”을 “제출안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를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긴급을 요한다고”를 “긴급하다고”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발의 제출은”을 “제출·발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발의하는”을 “발의할”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발의의원”을 “발의위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부의한다”를 “부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부하되”를 “회부하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언어”를 “거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 제출”을 “(신

· 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의견제출”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의회 누리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같은 회의 규칙에”를 “이 규칙에서”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부의 할”을 “부칠”로 한다.

제15조 중 “본회의”를 “본회의는”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심사 보고한”을 “심사보고한”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사람이 청구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언어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이”를 “구청장은”으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을 “자신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려면”으로, “언어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본회의에 있어서의”를 “본회의에서”로, “제출하되”를 “제출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원회에 있어서의”를 “위원회에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번안 할”을 “번안할”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를 “질의·토론을 거

쳐 표결하되,”로 한다.

제21조 중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을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할”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을 “의원은 발언하려면”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하되”를 “하되,”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의제외 발언의 금지)”를 “(의제 외 발언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하되”를 “하되,”로, “초과 할”을 “초과할”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하되”를 “하되,”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선포하여야한다”를 “선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6조 중 “표결에 있어서”를 “표결 시”로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가부(可否)”를 “가부”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를 “투표·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게”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개”를 “여러 개”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개”를 “여러 개”로, “것 부터”를 “것부터”로 한다.

제4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발의, 제출, 회

부, 환부, 이송”을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부의안건”을 “제출안건”으로 한다.

7. 제반 보고사항

제42조제1항 본문 중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을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으로, “서명,”을 “서명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회기동안만 서명,”을 “회기 동안만 서명 또는”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재, 복사하게”를 “전재·복사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공표되어서”를 “공표해서”로 한다.

제2장에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의 의사를 의회 누리집 등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

② 중계는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에서 의 회의에 한정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는 제외한다.

제44조의3(영상회의록 공개기준과 공개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이하 “영상회의록”이라 한다)을 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영상회의록의 공개는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본회의중 위원회 개최)”를 “(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로 한다.

제47조 중 “찬성자를 요”를 “찬성자가 필요”로 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를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조례안”을 “조례안,”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전문지식을 요하는”을 “전문지식이 필요한”으로, “한다)”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 · 일시 · 장소 · 진술인 · 경비”를 “안전 · 일시 · 장소 · 진술인 · 경비,”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부의한”을 “회의에 부친”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결과 그 밖의”를 “결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인쇄하여”를 “인쇄물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할 때”를 “긴급한 경우”로 한다.

제57조제1항제6호 중 “안전 명”을 “안전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부의할”을 “부칠”로, “안전 명”을 “안전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명 · 날인한다”를 “서명 또는 날인한다”로 한다.

제58조 본문 중 “회의록 그 밖에”를 “회의록, 그 밖의”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부의한다”를 “부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를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부의할”을 “부칠”로 한다.

제62조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부의하도록”을 “부치도록”으로 한다.

제64조제3항 본문 중 “징계대상의원에게”를 “징계대상의원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찬성위원을 요”를 “찬성위원이 필요”로 한다.

제65조제2항 단서 중 “집회일 부터”를 “집회일부터”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징계 안”을 “징계안”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부의하여”를 “부쳐”로 한다.

제6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자문”을 각각 “자문 응답”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차례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